노인복지법

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 - 총괄) 044-202-3456, 3455

보건복지부(노인지원과 - 노인여가복지시설) 044-202-3478, 3479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 - 노인의료복지시설) 044-202-3513, 3516

보건복지부(요양보험운영과 - 재가노인복지시설) 044-202-3511, 3521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 - 인권교육,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·학대 관련사항) 044-202-3452, 3453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 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